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창 원 시 의 회

##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7.(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일: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의안번호 제103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 2. 제안설명 요지 (이유정 자치행정국장)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나 창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3. 주요 내용

가. “초·중·고등학교” 및 “입학준비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 학생으로 정하고,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다. 입학준비금의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함. (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제출과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시장의 지원 여부 결정·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입학준비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등 (안건책자 참조)

##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 □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정의)】**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는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으로, 지원금의 범위는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함.

○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입학준비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안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입학준비금의 지급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정함.

○ **【안 제5조(신청)】** 입학준비금의 신청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6조(지원절차)】** 입학준비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종류와 서식, 처리 절차 등을 정함.

○ 【안 제7조(환수), 제8조(협력체계 구축)】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환수 근거와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

## □ 종합 의견

○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로 판단함에 따라, 창원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창원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 간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함.

다만, 중복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지원금액을 2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 상 자 | 총금액 | **市지원** | 道교육청 지원 |
|---|---|---|---|
| 다자녀 | 50만원 | **20만원** | 30만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
| 저소득 | 40만원 | **30만원** | 10만원 (저소득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
| 한 자녀 | 30만원 | **30만원** | - |

○ 지급방법은 모바일 누비전으로, 도서 및 학용품, 신발, 안경, 스마트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이는 지원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손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생 등 모바일 누비전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도교육청과 같이 기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창원시의 재정 여건과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요 예산 】 연평균 104억 (시비 50억, 도교육청 54억)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 대상자 | 24,537명 | 24,277명 | 22,164명 | 20,705명 | 20,197명 |
| 시비 | 54억 | 53억 | 48억 | 47억 | 45억 |
| 도교육청비 | 60억 | 60억 | 54억 | 50억 | 49억 |
| 총 예 산 | 114억 | 113억 | 102억 | 97억 | 94억 |

6.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기재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